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5월 15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5. 7.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5. 11. 20.) 상정, 축조심사, 의
결(원안가결)

제8차 전체회의 (2025. 11. 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
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환경부장관 김성환)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나무·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무허가 토지 출입 등에 대한 행정형벌(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51조를 삭제하고,

안 제53조제1항을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무허가 토지 출입 등에 대한 행정질서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사 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고 있는 타 법률과 처벌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원안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본문 중 “제49조 또는 제51조”를 “제49조”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해당한다)가”를 “해당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 ①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1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3호 중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를 “제49조, 제52조 및 제53조”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삭 제></u>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49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u>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양벌규정) ----- ----- ----- ----- <u>제49조</u>----- ----- ----- ----- ----- ----- ----- ----- -----.
제53조(과태료) <u><신 설></u>	제53조(과태료) ① <u>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u>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u>해당한다</u>)가 부과·징수한다.	<u>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 ----- ----- ----- <u>해당한다</u>),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
--	--